

-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(변경)안불합리에 따른
청원(거의1동)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일자 : 2002년 10월 24일

나. 청 원 자 : 구미시 거의동 164번지 석창균 외 118인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10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10월 28일

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소개의원 : 구미시의회 의원 박 배 원

나. 청원내용

○ 거의1동은 도·농 통합이 되기 전 199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예정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·농통합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금번 도시계획재정비결정(변경)안에는 주거지역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음.

○ 마을의 지리적 여건은 거의2동 금오공대와 제4공단 및 제2공단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있으며, 이미 주위가 모두 학교, 공단 등으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나 거의1동만 자연녹지로 남아 있음.

○ 오래 전부터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주위에 대규모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로 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므로, 주거지역으로 지정 요망.

3. 검토의견 - 전문위원 정 완 진

- 주민들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역의 제반 여건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거주환경의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재정비(안)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의견서 채택